

의안번호	제 356호
의결년월일	1995. 6. 9.
의결사항	

발의자	박병수 의원외 3인
제출 년월일	1995. 6. 7.

보은군의회 제43회(임시회)회기결정의건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보은군의회 제43회(임시회)회기결정의 건

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
보은군의회 제43회(임시회)회기결정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
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: 안건 1부. 끝.

발 의 자 : (인)

(찬 성 의 원 서 명 : 붙 임 참 조)

1. 제 안 설 명

○ 보은군의회 제43회(임시회)회기를 95년 6월 9일 1일간으로 할것을 지방자치법

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함.

2. 제 안 이 유

○ 실상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초대보은군의회가 마무리되는 점을 생각하니 지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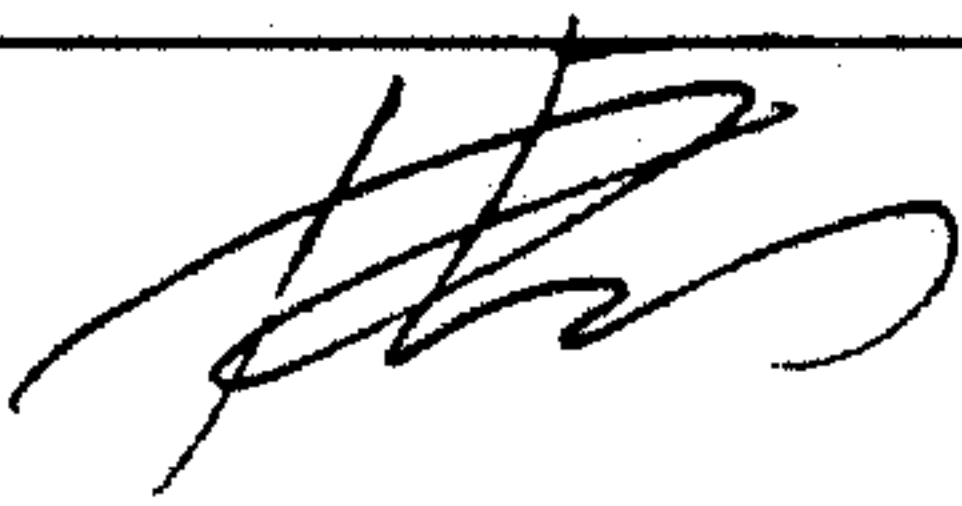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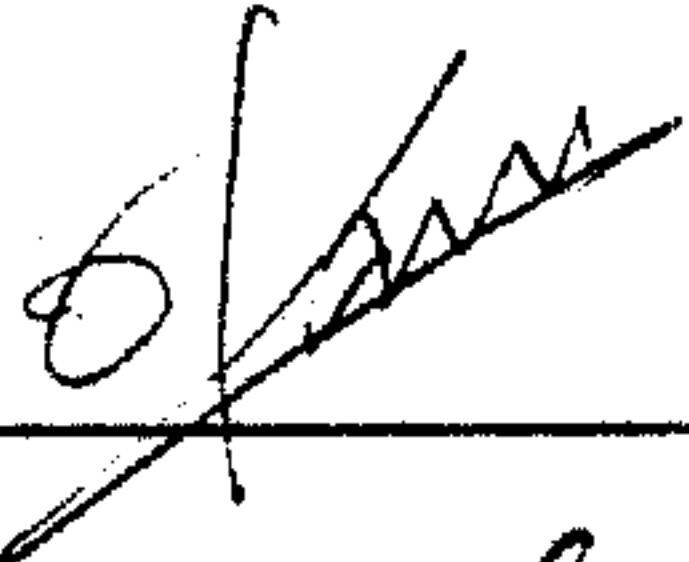
4년간의 의정생활의 감회가 새롭습니다.

○ 4대 지방선거가 불과 17일밖에 남지않아 시기적으로 모든것이 바쁘지만 시급히

처리하여야 조례개정안을 의원임기전에 마무리하여야 하기에 임시회를 1일간

으로 하고자 본건을 제안함.

의안찬성의원서명

성명	서명	(인)
유재영		
양승진		
비서관	